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1호로 2023년 9월 6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교섭단체 지원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9. 11. ~ 9. 1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5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2023.03.21.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3.09.22)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3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를 기반으로 각 정당 간 사전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